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507201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유지현, 류나영

피 고 1. A

2. B

3.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서범석, 김태원

변 론 종 결 2016. 8. 18.

판 결 선 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131,728원과 그 중 183,960,226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4. 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131,728원과 그 중 183,960,226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의 2014. 4.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원고에게 63,442,3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10. 10. 13.(2014. 10. 10.로 최종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피고 A,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 하였다.

나. C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10. 15. D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 원을 대출받고도 그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2015. 1. 15. D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합계 183,960,22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에 따라 C이 부담하는 위약금은 1,239,520원, 채권보전비용은 931,982원이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 186,131,728원과 그 중 183,960,22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4. 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전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사이에 2014. 4.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감행함으로써 피고 B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별지 기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배당된 63,442,381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다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4. 4. 8. C에게 신용보증원금 1억 9,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5. 4. 9.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4. 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중소기업자금 대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한 신용보증 등의 경제적 목적이 정당하고 실현 방법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층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84.98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 8285.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8285.10분의 28.614

(이상 피고 소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동기소 관할)

근저당권설정통기의 표시

1.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동기소 2014년 4월 7일

집수 제 21482호 윤구순위 제6번

근저당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채권최고액 금247,992,000원